

보도시점 2023. 6. 26.(월) 15:30 배포 2023. 6. 26.(월) 10:00

- ◇ **산단·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등록’ 허용**
- ◇ **가정폭력 이동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권’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 ◇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 폐지**

-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이 만든 규제개선 사례 8개 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제안 규제 소통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를 통해 최근 개선된 8개 사례를 발표하였다.
- 금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하여 128건을 개선하였고,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	소관
①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중기 경영애로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업만 입주 가능(건설업 입주 불가)	산업부
②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 방지	행안부
③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지자체
④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을 완화,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관광 명소 조성 * 공원시설 중 온실(교양시설), 전망대(편익시설) 등	국토부
⑤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 * 대상 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 → 10만 kW 이상	환경부
⑥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건당 500~1,000만원) 제출을 면제하여 비용부담 완화 * 주변이 평탄한 지형으로 붕괴나 토사유출 위험 또는 형질변경이 없는 산지전용 등	산림청
⑦ 법인 주소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변경으로 신청 불편 해소 ※ 현재, 개인 주소변경 시 전산 연계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변경 가능	국토부
⑧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규제 폐지, 자영업자 현장 어려움 해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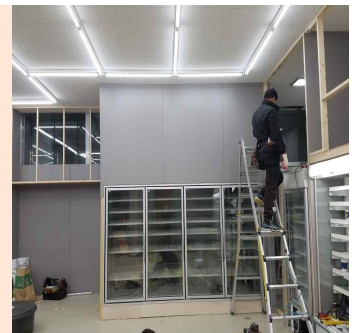
- 국무조정실 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원칙 아래,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 “규제혁신 과제가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한 대표사례를 포함한 규제신문고 운영현황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으며, 3개월 단위로 현장중심 규제개혁 사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①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여 증기 경영애로를 해소합니다.

- ▶ (기존)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설치·시공 등을 위한 일체의 ‘전문건설업’ 입주 불가(산업시설구역내 전문건설업 운영 불가)
 - ※ 건설업 영위를 위한 별도 사무실 설치 등 추가비용 발생과 발주처의 건설업 면허요구 시 즉각 대응 어려움으로 입찰·수주 무산 등 경영애로
- ▶ (개선)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부대시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산업시설구역내 전문건설업 운영 허용)
 - ※ 전국 산업단지(약 13백개) 기업현황(’23년) : 약 12만개

 **산업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23.11**

A 기업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 받으면서 설치까지 요구받았다. 이에 A 기업은 설치를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기 위해 허가관청을 찾았지만 산업단지 내에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신청이 반려되었다. 결국 A 기업은 최종 계약에 실패하였고 추가 발주분 포기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큰 손해를 입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기업도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설치·시공이 가능하게끔 전문건설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업체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함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 완화로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 관광 명소로 조성합니다.

- ▶ (기존) 공원 내 건축물은 높이 4층(16m) 이하만 가능
- ▶ (개선) 대형공원(면적 10만㎡ 이상 근린공원) 내 특정 공원시설* 높이 제한 폐지
 - * 공원시설 중 온실(교양시설), 전망대(편익시설) 등

☞ 국토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6

A시는 차별성과 특화성이 부족한 기존 대형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민들은 뉴욕 하이라인공원 베젤(vessel, 높이 45m의 계단식 구조물)처럼 공원 랜드마크로써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이끄는 전망대 설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원은 최대 높이 16m까지만 건축물 설치만 허용된 탓에 뉴욕의 베젤과 같은 랜드마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공원에 수목 생육이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경관에 어울리는 전망대, 온실 등 특정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A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대형공원에 다채로운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⑤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 ▶ (기존) 환경영향이 적은 발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과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상이
 - * (태양력·풍력 발전소) 발전시설용량 10만 kW 이상 / (전기저장장치) 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
- ▶ (개선)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 수준으로 완화(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 → 10만 kW 이상)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4. 2

6만 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최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2만 kW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설비를 계획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와 달리 전기저장장치는 발전시설 용량이 1만 kW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사는 전기저장장치는 일종의 대형 배터리로 태양력, 풍력발전 사업보다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음에도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간과 수천만 원의 대행 비용을 따져 보니 투자를 해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도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 사업에 대해 기존 태양력, 풍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규모가 있는 전기저장장치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태양력과 연계한 전기저장장치 투자가 촉진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 (기존) 산지전용(임야 → 전, 대, 공장 등 지목변경) 면적 660m² 이상인 경우 산림재해 예방 목적으로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필요
- ▶ (개선)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재해 위험이 없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건당 500~1,000만원, 45일 이상 소요) 제출 면제
 - * 주변이 평탄한 지형으로 붕괴나 토사유출 위험 또는 형질변경이 없는 산지전용 등
 - ※ 산지전용 현황('22년) : (허가) 약 2만3천건 (면적) 약 63Km²(여의도 면적 19배)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7**

A씨는 본인 소유의 산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부서로부터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만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 A씨 토지처럼 지목상 임야이긴 하나 산사태와 같은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붕괴나 토사유출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 시에는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합리한 산지전용 절차가 개선되어 A씨처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없어지고 허가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⑦ 법인 주소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으로 신청 불편을 해소합니다.

- ▶ (기존) 법인 이전 시 법인 주소변경(법원)과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지자체) 각각 필요
 - ※ 현재, 개인은 주소변경 시 전산 연계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 가능
- ▶ (개선) 법인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
 - ※ 법인 자동차 현황('21년) : 약 95만대(전체 9%)

👉 **국토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 연계, ~'24.12**

A사는 사업장 이전으로 법원에 가서 법인 주소변경을 완료하고 정식 가동을 준비하던 중(30일 경과), 행정당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未 신고'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황당했다. A사는 "개인 주소변경 시 전산 연계로 자동차등록증 주소가 자동 변경"되는 사례에 비춰 법인 이전 시에도 당연히 연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법인 주소변경 시 자동으로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변경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 이전 시 법인 주소변경과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을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⑧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규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기존)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 식품접객업에 경우, 간판상에 업소명과 함께 세부업종* 표기가 필요

* (세부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개선) 자영업 식품접객업소*의 간판에 세부업종 의무 표시 폐지

* 전국 식품접객업소 현황('21년) : 약 94만개소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4.3.

최근 스파게티 전문점 오픈을 준비 중인 A씨는 가게 홍보를 위해 간판 제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확정하고 간판 제작에 들어가려고 하니 간판 제작업자가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표시 의무로 인하여 '일반음식점'을 표기해야 하고 추가 비용까지 든다는 말을 들었다. 계획했던 간판의 달라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주변 음식점 간판을 보니 '일반음식점'을 표기한 음식점보다 미표기한 음식점이 많아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법을 지켜야 할지 간판 미관을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정부는 현재 외관상 세부 식품접객업종 구분이 가능하고 영업장 내에 비치된 영업신고증을 통해서도 세부업종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 실효성 없는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의무('76년 도입)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현장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임택진 (044-200-2630)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0-2634)

